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2015년 1월 14일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지부장 아라가키 츠토무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 위 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결정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통합진보당이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것이 정당 해산을 규정한 한국 헌법 제 8 조 4 항에서 말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 헌법은 민주적인 국가에서 보장되어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8 조 1 항),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21 조 1 항, 2 항) 및 양심의 자유(19 조)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는 인권 보장의 국제 수준인 국제인권규약 B 규약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 결사의 자유에 대해 위 규약 22 조는 1 항에서 "모든 사람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2 항에서 결사의 자유의 권리의 행사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18 조 2 항에서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 규정은 지난 세계대전 이전, 특히 소수자의 정치적 의견의 보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역사적 반성에 입각해서 정해져 있다. 따라서 22 조 2 항을 포함해 이 규약에 규정이 있는 제약은 그것이 권력에 의한 소수자의 자유의 부당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 해석, 적용이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제약은 구체적 위헌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권 보장에 대한 국제 수준이며 한국 헌법도 이 국제수준에 맞게 해석 및 운용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헌법의 규정이나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또 한국의 민주화에 이르는 역사적 경위까지도 함께 고려하면 정당의 해산을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따를 것을 정한 한국헌법 8 조 4 항은 위정자의 탄압에서 소수 정당을 보호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 규정에 따라 정권을 비판하는 소수 야당을 해산할 경우는 가능한 자제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민주국가의 모습인 것이다.

전후 70 년동안 인류는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쌓아왔으며 한국의 민주화는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자유와 권리 획득의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한 한국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을 근거로 소수 정당의 해산을 명령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헌법의 취지와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에도 위배되었으며,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부당성은 명백하다.

우리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한국과 오키나와 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호관계에 비추어, 또한 이웃 나라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변호사 집단으로서 이번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상